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 립 부

농림부는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 개정(2006. 12. 28, 법률 제8107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의무자조금 대의원 총수를 조정하여 축산자조금의 원활한 조성과 운용을 도모하고, 대의원 선출을 위한 시장·군수 등의 보고사항을 조정하고 수납기관 수수료 및 수납기관의 거출금 납입기한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자조금의 원활한 조성과 운용을 도모코자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다.

1.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의무자조금 대의원 총수 조정(안 제2조)

(1)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육우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육우 의무자조금 대의원 총수를 신설하고 생산자 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축종의 대의원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무자조금 대의원 총수를 육우는 80명으로 신설하고, 젖소는 150명에서 130명, 돼지는

200명에서 150명, 육계·산란계는 150명에서 각각 80명으로 하향 조정함.

(3) 육우 의무자조금 대의원 총수를 정함으로써 의무자조금 조성에 필수적인 대의원회 구성이 가능해지고 일부 축종의 대의원 총수를 하향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조금 조성 및 운용이 기대됨.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호 중 “150명”을 “130명”으로 하고, 동조제3호 중 “200명”을 “150명”으로 하며, 동조제4호 및 제5호의 “150명”

을 각각 “80명”으로 하고, 동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육우 : 80명

제4조 중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중 “의하여 실시한 조사결과”를 “다른 보고”로 한다.

별표 2의 제2호 개별기준의 위반행위란 중 가목의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자조금”으로, 나목 내지 마목의 “거출금”을 “의무거출금”으로 하고 바목의 “자조활동자금”을 “자조금”으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원 총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대의원회부터 적용한다.

2.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대의원 선출을 위한 시장·군수 등의 보고 사항 조정(안 제6조)

(1) 축산자조금법의 개정으로 대의원 선출을 위한 시장·군수·구청장의 별도의 축산통계조사 의무가 폐지되고 최근 1년 이내의 행정통계자료를 보고토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조사의무를 폐지하고 보고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대의원 선출을 위한 가축사육두수 등에 대한 별도의 조사의무를 폐지하여 보고의무로 조

정하고 보고사항에서 사육기간을 제외함.

(3) 대의원 선출을 위한 별도의 조사를 폐지하고 보고사항을 줄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수납기관 수수료 상향조정(안 제9조)

(1) 수납기관(도축장 등)의 거출금 징수 수수료를 높여 수납기관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자조금의 원활한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를 거출금의 100분의 5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함(현행 : 거출금의 100분의 3이내).

(3) 수납기관의 성실한 자조금 징수와 새로운 수납기관의 참여를 촉진하여 자조금 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수납기관의 거출금 납입기한 연장(안 제10조 제3항)

(1) 의무거출금 납입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도축두수 등의 자료가 매달 5일 경에 자조금사무국에 통보되고 있어 매달 10일까지 거출금납입 고지서의 발급 및 거출금 납입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수납기관의 거출금 납입기한을 매달 20일까지로 연장함(현행 : 매달 10일까지).

(3) 거출금 납입과 관련한 자조금 사무국과 수납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됨.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자조활동자금사업계획서”를 “자조금사업계획서”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조활동자금사업계획서”를 “자조금사업계획서”로 하며,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4호 중 “자조활동자금”을 각각 “자조금”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공동자조활동자금설치준비위원회”를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로, 동조제1항 중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자조활동자금”을 “자조금”으로 하며, “공동자조활동자금설치준비위원회”를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1호 중 “자조활동자금사업계획”을 “자조금사업계획”으로 하고, 동항제2호 중 “자조활동자금”을 “자조금”으로 하며, 동조제4항 중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를 “자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거출금”을 “의무거출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거출금”을 “의무거출금”으로 하며, 동조제4항 중 “거출금”을 “의무거출금”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조사”를 “보고”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조사”를 “보고”로, “사육두수, 사육기간을 조사”를 “사육두수를 보고”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

한다.

제9조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5”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거출금”을 “의무거출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거출금”을 “의무거출금”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거출금”을 “의무거출금”으로 “10일”을 “20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자조활동자금”을 “자조금”으로 하고, 동조 본문 중 “자조활동자금”을 “자조금”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를 “자조금관리위원회”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조금관리위원회”로 하며,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자조활동자금관리사무국”을 “자조금관리사무국”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자조활동자금관리사무국”을 “자조금관리사무국”으로 한다.

제16조 중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축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당신의 일이 비록 작은 일이라도 전력을 기울여라.
성공은 자신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데 있다.
성공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간 사람들이다.

- 고리키